

학 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부산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01.>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부산보건대학교라 한다. <개정 2023.03.01.>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괴정동)에 둔다. <개정 2018.09.01.>

제5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2.01., 2020.02.01., 2021.02.01., 2021.06.21., 2023.03.01., 2023.06.20., 2025.02.04.>

계열·학과명	입학정원			계열·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드론융합부사관과	20		20	치위생과	40		40
사회복지과	34	20	54	스포츠재활과	34		34
유아교육과	31		31	반려동물보건과	20		20
특수재활과	20		20	글로벌뷰티계열	80		80
항공관광과	20		20	디저트&서양조리과	27		27
호텔·바리스타과	20		20	커피&디저트카페창업과		20	20
간호학과	135		135	호텔제과제빵과	80		80
물리치료과	40		40	디지털헬스케어과	20		20
응급구조과	40		40	광고콘텐츠디자인과	20		20
작업치료과	40		40	실용음악과	21		21
계					742	40	782

제5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01., 2021.02.01., 2023.03.01., 2025.02.04.>

계열·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물리치료학과		20	20
실용음악학과		16	16
유아교육학과		23	23
응급구조학과		17	17
작업치료학과		20	20
호텔제과제빵학과		20	20
치위생학과		20	20
글로벌뷰티학과		20	20
계		156	156

제5조의 3(마이스터대학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의 마이스터대학 석사학위 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입학 및 학사운영, 졸업 등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06.21.>

계열·학과명	입학정원(야간)
물리치료학과	6
계	6

제 2 장 직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 또는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과교원은 그 소속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19.07.01., 2020.07.01.>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두며, 장애학생의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③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특임교수 등의 비전임 교원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9.01., 2019.07.01., 2025.06.13.>

1. 명예교수 :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9.07.01.>
5. 특임교수 : 본 대학교와 관련된 국책사업, 산학협력 등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등 공로가 있는 자

제6조의 2(강사)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 석과학원 정관 제36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07.0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서 명시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신설 2019.07.01.>

③ 강사의 임면, 신분보장, 근로조건, 휴직, 징계 등 모든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7.01.>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5.06.13.>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장애학생 지원 업무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9.01.>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및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8.09.01.>

제8조(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교무처, 입학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사무처,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1.06.21.>

② 각 처에 처장을,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보하고 그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처와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 및 사무분장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3년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제10조(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만, 매 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학기제,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55조에 의한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4월26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신설 2023.06.20.>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신입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8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입학전형) 신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2.01.>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2.01.>

제22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합격자 사회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3.01.>

제23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①(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마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② 통합 또는 폐교된 대학의 재적생이 편입학할 경우 모집인원과 학기에 관계없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7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매학기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열·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혹은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개정 2025.06.13.>

② 전과의 전출 및 전입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휴학 중 재적학과가 폐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과시기, 인원, 방법 등을 예외로 한다.

제 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휴학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01.>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으로 신청 1개월 전에 창업을 했거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휴학 전까지 취득한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기 시작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⑦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2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대학원 제외)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총장이 제적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6.13.>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2.01.>

② 전공교과는 학과의 사정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계열·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01.>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성취도가 높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채용 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2020.02.01., 2023.03.01.>

⑤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과 시대에요구에 부응하는 전공능력의 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형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3.01.> <개정 2025.06.13.>

제33조의 2(진로코칭 운영)진로코칭 제도는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까지 대학생할 적응, 학생적성, 생활지도, 경력관리, 진로지도 등 학생지도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대학생활과 진로코칭, 인성과 진로코칭 학점은 1학점으로 한다.

2. 대학생활과 진로코칭, 인성과 진로코칭 교과목은 교양기초로 구분한다.

제34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13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3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 등 16주 이상의 현장학습을 이수한 학생은 20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선행학습, 창업활동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2.01.>

④ 재학 중 외국어 및 자격증, 취업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사회봉사 실적 등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과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01.>

⑥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⑦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 이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⑧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5.06.13.>

⑨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정한다.

제37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수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2025.06.13.>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학기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업시간의 1교시는 50분으로 하며 야간강좌는 1교시를 45분으로 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부족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4.02.01.>

제38조(집중수업)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실습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01.>

③ 부속기관 및 타 기관의 강의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교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동일계열 및 학과 내에서 전일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2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상고,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출석을 의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2.01.>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3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며,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단,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시 및 정기시험을 대신하여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59점 이하(F)으로 처리한다. 단,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자는 예외로 한다.

④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⑤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자 및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적 평가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제44조(추가시험) ① 질병,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시험기간에 미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의2에서 보장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가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03.01.,

2024.02.01.>

②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직무능력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배 점	평점
A ⁺	100점 - 95점	4.5
A ⁰	94점 - 90점	4.0
B ⁺	89점 - 85점	3.5
B ⁰	84점 - 80점	3.0
C ⁺	79점 - 75점	2.5
C ⁰	74점 - 70점	2.0
D ⁺	69점 - 65점	1.5
D ⁰	64점 - 60점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②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급제로 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자 및 국가적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제46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제47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48조(유급) 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

② 유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졸업)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여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위증을 수여하며 학위증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06.13.>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과정 70학점, 3년제 과정 110학점, 4년제 과정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01., 2025.06.13.>

③ 졸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2(졸업유보) ① 학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유보자로 처리한다. <개정 2025.06.13.>

② 제49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교직원과목이수,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취득 및 기타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0.02.01., 2025.06.13.>

③ 졸업유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칙 제49조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인이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06.13.>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6.13.>

제50조(후기졸업)졸업유보자가 제4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1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1, 2호에 의하여 별표1, 1-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2.01.>

1. 1학년 수료 : 3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25학점 이상

제 10 장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53조(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58조의 2에 의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의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대학 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02.01.>

④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대학교 동일과를 졸업하거나 [별표 2]에 해당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⑤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 수여·취소)①본 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은 [별표1-1]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②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제54조 3항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별지 4]에 의하여 [별표1-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02.01.>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④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장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제54조(목적)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은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1.11.01.>

제54조의 2(설치·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의 2 등에 의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1.01.>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는 3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1.11.01.>

③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1.01.>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석사학위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01.>

제54조의 3(교육과정) ① 석사학위과정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01.>

② 본 대학교의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01.>

제54조의 4(학위 수여·취소)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위 종별은 전문기술석사로 하며 전공 학과와 학위 명칭은 [별표 1-2]과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21.11.01.>

② 석사학위과정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11.01.> <개정 2025.06.13.>

1.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 등록을 마친 자
2. 전문기술석사 교육과정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나 특허 등록 또는 논문 등에 대한 심사 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1-2]에 의한 [별지 5]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신설 2021.11.01.>

④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1.01.>

제 12 장 평생교육

제55조(공개강좌 및 비정규 특별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공개강좌 및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계열·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1.11.01.>

③ 공개강좌 및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1.>

제56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

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등록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본 대학교 입학정원의 10%범위 이내로 하고,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본 대학교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5.06.13.>

③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하여 수업일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단위,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9.01.>

제57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제 과정은 12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3년제 과정은 65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호부터 9호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57조의 2(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3년제 과정은 65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 학점 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 3(학위수여) ① 제57조 2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여한다.

제 13 장 학생활동

제58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 기구인 부산보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3.01.>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1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3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외 학생집단 활동 시 활동을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담당교수는 집단 활동 시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활동에 대한 운영중지,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와 인권침해 행위자 및 집단 활동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14 장 규율 및 상벌

제66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9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6.20.>

제 15 장 등록금

제7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01., 2025.06.13.>

- ②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등 필요한 경우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9.01.>

제71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2.01.>

제72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제73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9.02.01., 2025.06.13.>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4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25.06.13.>

제74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등록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9.02.01.>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7.01.>

③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

제75조(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02.01.> <개정 2022.07.01.>

1.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76조(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02.01.>

제 16 장 장학금

제77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자퇴하는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9.02.01.>

제 17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78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4.12.>

1. 교원 5명(교수회에서 추천)
2. 직원 3명(직원회에서 추천)
3. 조교 1명(조교회에서에서 추천)
4. 학생 1명(총학생회에서 추천)
5. 동문 1명(총동문회에서 추천)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대학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위원회에 파견할 평의원의 선임을 위하여 각 직능단체의 성격에 따라 부산보건대학교 교수회, 부산보건대학교 직원회, 부산보건대학교 조교회로 구분하고 각 회는 제7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각 회의 해당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1.04.12.>

② 각 회의 평의원 대표 선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9.07.0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및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의 구조조정 결과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1조(평의원회 심의 자문 사항 통보) ① 평의원회의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즉시 총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평의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82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장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83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4조(교수회의 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단, 대학평의원회 교수 대표 선출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정관이 정한 행정보직자를 제외한 교수들 중 호선에 의해 임시 의장이 되어 회무를 진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제안한다.

1. 교수 평의원을 선출하는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교수 평의원과 관련하여 재직 교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교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교수 평의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5조(교수회의 의결) 교수회는 재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교수회의 사무) 본 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06.21.>

제87조(교무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및 계열·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8조(교무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3.01.>

1.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9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90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2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4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개정안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제 20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95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19.07.01., 2021.06.21., 2022.07.01., 2023.06.20., 2025.06.13.>

1. 평생교육원
2. 도서관
3. 석파박물관
4. 중앙전산소
5. 동주생활관
6. 미디어센터
7. 부산보건대학교 체육관
8. 삭제 <2021.06.21.>
9. 국제교류원
10. 삭제 <2019.07.01.>
11. 삭제 <2021.06.21.>
12. 삭제 <2021.06.21.>
13. 삭제 <2023.06.20.>
14. 인권센터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5조의 2(도서관의 운영 등) ① 총장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도서관에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2.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장은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총장은 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1항~5항은「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 운영규정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0.>

② 인권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0.>

③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0.>

④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6.20.>

제96조(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8.09.01., 2025.06.13.>

1. 관광서비스교육센터

2. 영·유아교육연구소

3. <삭제> <2025.06.13.>

4. 운전재활연구소

5. 지속가능 사회공헌 연구소

6. 제과제빵연구소

②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1 장 학교기업

제97조(학교기업 설치)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8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매학기당 인정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매학기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9조(보상금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2 장 자체평가

제100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총장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2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3조(평가결과의 공시)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5.06.13.>

<삭제> <2025.06.13.>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자가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③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폐지되는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988학년도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정원	적 용 학 년 도		비 고
		부 터	까 지	
가 정 과	160	1986	1987	
	120	-	1988	
산업디자인과 (응용미술과)	120	1986	1987	' 87 : 과명칭 변경 응용미술과 → 산업디자인과
	80	-	1988	
유아교육과	280	1986	1988	
경 영 과	200	1986	1988	
	160	-	1989	
세무회계과	80	1986	1989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

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1989학년도 입학한 학생중 소속학과의 학생은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 ③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사무자동화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무역사무자동화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 22조 제1항의 규정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시행이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22조 제4항, 제52조는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보험실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보험금융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5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실내장식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실내디자인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의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의상디자인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주여자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주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전산정보처리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컴퓨터통신과의 소속으로 한다.

- ③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1998학년도 이전에 관광과, 관광통역과, 피부미용과에 입학한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계열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④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비서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국제비서과 소속으로 본다.
- ③ (계열모집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1999학년도 이전에 가정과, 식품영양과, 국제교양과, 의상디자인과, 경영과, 세무회계과, 보험금융과, 산업미술과, 광고사진과, 편집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섬유디자인과, 무역사무자동화과, 컴퓨터통신과, 전자계산과에 입학한 학생은 2000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1학년도 부터는 통합된 계열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1조 별표1의 전문학사 학위는 2000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국제비서과, 패션디자인계열, 멀티미디어디자인계열, 조형디자인계열, 실내디자인과, 전통도예과, 음악과, 생활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가 자퇴 혹은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3년제로 재입학 하여야 하며, 휴학 후 복학할 때에는 학생의 원에 의하여 2년제 또는 3년제로 복학할 수 있다.
-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비즈니스정보계열, 호텔·관광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계열, 네트워크전자계열, 시각영상디자인계열, 예·체능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계열 및 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토털패션계열, 공간디자인계열, 비즈니스정보계열, 컴퓨터정보통신계열, 시각디자인계열, 예·체능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

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계열·학과 및 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식품과학계열, 패션계열, 경영계열, 호텔·관광계열, 컴퓨터정보계열, 시각디자인계열, 리모델링인테리어계열, 사진영상과, 음악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패션코디&모델과, 세무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계열, 관광통역계열, 경찰사이버보안과, 캐릭터애니메이션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유아특수교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외식조리&영양계열, 광고그래픽디자인과, 문화관광이벤트과, 특수교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방과 후 아동지도과, 웹모바일정보과, 방송사진영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50조 별표1의 전문학사 학위는 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사이버경찰과, 중국관광통상과, 관광영어과, 산업디자인과, 아동미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계열, 생활체육과, 조선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웹정보과, 자동차튜닝과, 조선정보기술계열, 문화관광·전시이벤트과, 관광일어과, 사진영상과, 실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32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2호의 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의리기공학과, 사이버경찰행정과, 재활요양관리과, 유아특수재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32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 ③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의료전산시스템과, 자동차·튜닝과, 의료관광일어과, 유아특수재활과, 패션코디&디스플레이과, 패션스타일리스트/주얼리과, 패션뷰티디자인과, 방송영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패션디자인과,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유통경영과 재적생 중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호텔·관광계열, 항공운항과, 항공항만경영계열, 재활요양관리과 재적생 중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의료정보시스템과, 간호과, 재활의료관리과, 패션스타일링·디스플레이과 재적생 중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소속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학기 조기 취업자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 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6항의 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5조(설치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제92조(부속기관)의 시행일은 2018년 03월 01일로 한다.
- ② (부속기관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속기관 창업지원단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

영하였기에 2017년 11월 01일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성적의 취소), 제49조(졸업) 및 제52조(수료)의 적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학점 이수)의 적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02.01.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후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제49조(졸업)의 적용은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졸업 최저 이수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07.01.부터 시행한다.
- ②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1학기 수업 및 시험, 성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37조(수업), 제43조(시험), 제45조(성적) 등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적용) 제5조에 의한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적용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임교수의 적용) 제6조제3항과 같은 항 제5호에 의한 특임교수는 2024년 06월 0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③ (교원의 임무의 적용) 제7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산학협력만을 위한 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개정과 학칙 제6조에 의거 2016.12.20. 이후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④ (제적의 적용)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제적 사유는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적 후 납부한 등록금 반환의 적용) 제32조제2항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⑥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적용) 제49조의 3의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⑦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기준의 적용) 제53조제4항 및 별표2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별지 1] <개정 2023.03.0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

제	호
---	---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

부산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제	호
---	---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전문기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기술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

부산보건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별표 1] <개정 2018.09.01., 2021.02.01., 2023.03.01., 2025.02.04.>

전문학사 학위종별

종 별	계 열 · 학 과
조리 전문학사	디저트&서양조리과
제과제빵 전문학사	호텔제과제빵과
산업예술 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관 광 전문학사	호텔·바리스타과, 항공관광과
디 자 인 전문학사	광고콘텐츠디자인과
미 용 전문학사	글로벌뷰티계열
예 술 전문학사	실용음악과
사회복지 전문학사	사회복지과
특수예술 전문학사	특수재활과
유아교육 전문학사	유아교육과
보 건 전문학사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응급구조과, 디지털헬스케어과, 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보건과
치 위 생 전문학사	치위생과
군 사 전문학사	드론융합부사관과

[별표 1-1] <개정 2023.03.01.>

학사학위 종별

종 별	계 열 · 학 과	비 고
간호학사	간호학과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	전공심화과정
실용음악학사	실용음악학과	전공심화과정
유아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전공심화과정
응급구조학사	응급구조학과	전공심화과정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전공심화과정
제과제빵학사	호텔제과제빵학과	전공심화과정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별표 1-2] <신설 2021.11.01.>

전문기술석사학위 종별

종 별	계 열 · 학 과	학위명
물리치료 전문기술석사	물리치료과	전문기술석사학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동일계열 관련 학과 기준

분야(계열)	학과명	관련 학과명
자연과학 (보건)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과
예체능 (예술)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과, 방송음악과, 한국음악과, 생활음악과, 음악예술과, 대중음악과, 디지털음악과, 한국음악과, 영상음악계열 등 유사학과
인문사회 (교육)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자연과학 (보건)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과
자연과학 (보건)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과
자연과학 (생활과학)	호텔제과제빵학과	제과제빵과, 제과제빵산업과, 식품가공제과제빵 등 유사학과
자연과학 (보건)	치위생학과	치위생과
자연과학 (보건)	글로벌뷰티학과	헤어뷰티과, K-뷰티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아트과, 뷰티코스메틱, 뷰티코디네이션,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융합디자인과, 방송메이크업, 보건미용과, 미용피부화장품과 등 유사학과